## [서식 예]



)

##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증 제	তু	Ļ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상	성 명 ·호, 명칭)			피공탁자	성 (상호	명 호, 명칭)			
,   -	주 소 ], 주사무소)			탁 자	주 (본점,	소 주사무소)			
공탁유가증권					공탁				
명 칭			계		원인				
장 수					사실				
총액면금	한글 숫자				소멸	ナ으로 인하 불하는 질권	.,		
액면금 기호번호						∥권 또는 <i>&gt;</i> H급부 내용			
부속이표					5	면 관 은 혀	il e	은행	지점
최종 상환기						비고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					] 주소	<u>.</u>			
공탁자 성명		인(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유가증권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유가증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2.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별지양식]



##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공서		
	5천만원 초과 <b>공</b>	공탁통지서	0	0	0	0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0	0	0	×		
공		신분증	0	0	0	0		
   탁	5천만원 이하 ~	공탁통지서	×	×	0	0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0	0	0	×		
금	1천만원 초과	신분증	0	0	0	0		
액		공탁통지서	×	×	×	×		
	1천만원 이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0	0	0	0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공탁소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참조).
-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 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 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8.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